

의안번호	2218910
의 퇴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4. 8.
추 계 번 호	26E199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및 감면율 상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69조의4(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○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경기간 요건 완화 및 감면율 인상 - (자경기간) 10년 이상 → 8년 이상 - (감면율) 자경기간별 10~50% → 100%로 일원화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현행</th><th colspan="2">개정안</th></tr> <tr> <th>직접 경영기간</th><th>감면율</th><th>직접 경영기간</th><th>감면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~20년 미만</td><td>10%</td><td rowspan="5">8년 이상</td><td rowspan="5">100%</td></tr> <tr> <td>20~30년 미만</td><td>20%</td></tr> <tr> <td>30~40년 미만</td><td>30%</td></tr> <tr> <td>40~50년 미만</td><td>40%</td></tr> <tr> <td>50년 이상</td><td>5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	개정안		직접 경영기간	감면율	직접 경영기간	감면율	10~20년 미만	10%	8년 이상	100%	20~30년 미만	20%	30~40년 미만	30%	40~50년 미만	40%	50년 이상	50%	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
직접 경영기간	감면율	직접 경영기간	감면율																				
10~20년 미만	10%	8년 이상	100%																				
20~30년 미만	20%																						
30~40년 미만	30%																						
40~50년 미만	40%																						
50년 이상	50%																					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의4(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자경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(10~50%)되던 감면율을 100%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여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□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경작기간별로 구분된 감면액 자료 등을 통하여, 자경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산지에 대한 신규 감면액 및 감면을 인상에 따른 감면액 확대 크기를 추정해야 하지만,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므로¹⁾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○ 참고로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7년 말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,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p
감면 실적	2	3	2	0.5	2

주: p는 전망치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국세청 문의 결과, 자경기간별 감면신고를 받고 있지 않아 구분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